대전보건대학교 간호대학 운영규정

2019. 05. 01. 최초제정 2022. 09. 01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전보건대학교 간호대학(이하 "간호대학"이라 한다)의 학사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조직 및 교육과정) ①간호대학의 인원은 학장, 학과장, 전임교원, 행정직원(행정· 실습조교)으로 구성된다.

②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간호학과 학사학위정규과정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구분되고 각 과정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간호대학 교수회의

- 1. 간호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.
- 2. 교수회의는 간호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며, 학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3.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- 가. 간호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
- 나.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- 다. 기타 간호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
- 4. 교수회의는 간호대학 전임교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,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5. 교수회의에 불참한 전임교원은 간호대학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.
- 6. 회의록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출석의원이 서명 날 인 하여야 한다.

제3조(학장의 임무) ①학장은 간호학 전공자로서 간호대학의 전임교원 중 학칙에 의거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- 1. 간호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
- 2. 간호대학 예산 편성과 운영
- 3. 간호대학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
- 4. 대학본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
- 5. 산학협력 및 협의회 등 대외활동
- ②학장은 간호대학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, 본교의 학사행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과장의 임무) ①학과장은 간호학 전공자로서 간호대학의 전임교원 중 학칙에 의거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, 간호학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교내·외 업무를 관장한다.

- 1. 교육과정 및 학사전반
- 2.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

- 3. 비품 및 기자재 관리 등 학과운영 전반
- 4. 시간강사와 조교 등 인력관리
- 5. 산학협력 및 협의회 등 대외활동

제5조(위원회) ①간호대학은 자체점검 및 평가, 교원관리, 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·점검 등을 통해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발전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인사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실습교육위원회, 교원양성위원회, 교육성과위원회, 간호학사학위 전공심화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2.09.01.>

②각 위원회는 간호대학 자체위원회로서 간호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·논의하고, 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간호대학에서 자체 관장한다.<개정 2022.09.01.>

1. 간호대학 발전위원회

가. 구성

- (1) 위원장은 당해 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(2)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과 산업체 인사 및 동문 등으로 구성한다.
- 나.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다. 기능: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(1) 간호대학 발전계획 및 운영의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관성 여부
- (2) 간호대학 외부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(3)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(4) 대외교류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- (5) 그 외 기타 간호대학 발전에 관련된 사항
- 2. 간호대학 자체평가위원회

가. 구성

- (1) 위원장은 당해 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(2) 위원은 각 영역들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평가영역별 연구위원들로 구성한다.
- 나.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다. 기능: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(1) 자체평가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
- (2) 인증 대비 자체평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
- (3)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
- (4) 그 외 기타 인증 및 평가와 관한 사항
- 3. 간호대학 인사위원회

가. 구성

- (1) 위원장은 당해 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(2) 위원은 간호학과 재직연한 10년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- 나.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다. 기능: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.
- (1) 간호대학 임용 대상자의 필요자격 검정요건
- (2) 교원관리에 대한 논의사항
- (3) 그 외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
- 4. 간호대학 교육과정위원회

가. 구성

- (1) 위원장은 학과장 혹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.
- (2)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.
- 나.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다. 기능: 위워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(1) 학과의 교육목적, 목표 수립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개선에 관한 시항
- (2) 교육과정 개발(편)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(3) 교육목표, 프로그램 학습성과, 교과목의 연계성, 관련성 검토 및 수정
- (4) 교과목의 지속적인 질 개선에 관한 사항
- (5) 기타 학과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5. 간호대학 실습교육위원회

가. 구성

- (1) 위원장은 학과장 혹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.
- (2)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.
- 나.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다. 기능: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(1) 실습교육 계획 수립
- (2) 실습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- (3) 핵심간호술 평가에 관한 사항
- (4)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
- (5) 임상실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
- (6) 그 외 기타 실습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6. 간호대학 교원양성위원회

가. 구성

- (1) 위원장은 당해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(2)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 외 교육전문가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나.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다. 기능: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(1) 교육과정 개발·편성 및 운영
- (2) 보건교사 자격검정 기준설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

- (3) 교원양성기관 평가 시 보건교사 양성기관 자체평가
- (4) 그 외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사항
- 7. 간호대학 교육성과위원회

가. 구성

- (1) 위원장은 학과장 혹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.
- (2)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.
- 나.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다. 기능 :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(1)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 구축
- (2)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분석
- (3)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 대상 교육목표 달성, 교육만족도 평가 및 분석
- (4)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분석 및 지표관리
- (5) 기타 교육성과관리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- 8. 간호학사학위전공심화교육과정편성위원회

가. 구성

- (1) 위원장은 당해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(2) 위원은 간호대학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.
- 나. 임기: 위원장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. 기능

- (1)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연구 개발
- (2)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- (3) 그 외 기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

제6조(기타) 그 외 심의가 필요한 내용은 학칙 및 간호대학 교수회의를 통하여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